



2025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세제분석2과 장설희 분석관

2025년 세법개정안 심의결과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2025.12.2.)에서 국세관련 법률안 12건 의결

-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7건 위원회안(대안) 가결
 - (소득세법)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자녀 보육 관련 급여 비과세 한도 확대 등
 - (조특법) 고배당기업 개인주주에 대한 분리과세 특례 신설,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 개편 등
- 법인세법, 교육세법 등 4건 원안(정부안) 가결
 - (법인세법) 과세표준 전 구간 법인세율 1%p 인상 등
 - (교육세법) 수익금액 1조원 초과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율 0.5%p 인상 등
- 종합부동산세법 1건 수정가결
 - (중부세법) 중부세 등의 추정 대상 주택 범위 구체화 등 원안(정부안) 일부 수정

▪ 심의 경과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정부 제출법률안 및 의원 발의 법률안 500건 상정 및 심사
- 11월 28일 국회의장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16건(국세관련 법률안 12건) 지정
- 법인세법,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외하고 심사기간 동안 여·야 합의가 이루어진 법안은 11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
- 심사기간이 도과하여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이 12월 1일 본회의 자동 부의
- 12월 2일 본회의에서 국세관련 법률안 12건 상정, 이 중 7건 대안가결, 4건 원안가결, 1건 수정가결

[표 1] 주요 심의 경과

일자	주요내용	비고
2025. 9. 3.	정부 세법개정안 13건 국회 제출	
2025. 11. 1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법개정안 상정(500건) • 의원발의 486건, 정부제출 세법개정안 14건*	*정부제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2025.5.28.)포함
2025. 11. 12. ~ 26.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총 6회 개최	
2025. 11. 28.	국회의장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16건 지정 • 국세관련 법률안 12건(정부안 11건, 의원안 1건)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교육세법 등
2025. 11. 3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 대안가결 8건, 원안가결 2건, 수정가결 1건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관세법 등
2025. 12. 1.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본회의 자동 부의	
2025. 12. 2.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 의결 • 7건 대안가결*, 4건 원안가결, 1건 수정가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된 대안 8건 중 농어촌특별세법 제외



세법개정안
심의 과정상
주요 수정 내용

▪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정된 정부 제출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고배당기업 개인주주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의 최고세율 인하
 - (정부안) 3억원 초과 35% → (수정) 3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5%, 50억원 초과 30%
-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저율분리과세 전환 대상 축소
 - (정부안) 총급여 5천만원 초과 준조합원 → (수정) 총급여 7천만원 초과 준조합원

▪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반영된 의원 발의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해 법 시행일부터 2년간 개별소비세 50% 감면(김영환 의원안)
- 청년미래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도입(정태호 의원안)
- 한국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금 손금산입 특례 신설(이소영 의원안)
- 항공기 부품품 관세 면제기간 3년 연장 및 감면을 단계적 축소 구간 폐지(박수영 의원안)

▪ 소득세제(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 분야)

- 고배당기업 개인주주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신설
- 자녀 수에 비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 자녀 양육가구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적용범위 합리화 등

개정세법
주요내용

[표 2] 소득세제 주요 개정 내용

구분	현행(2025년)	개정																										
고배당기업 개인주주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신설	<신설>	(전제조건) 기준연도 대비 배당이 감소하지 않을 것 (적용세율) 소득규모별 초과누진세율 적용 <table border="1"> <thead> <tr> <th>소득 규모</th> <th>세율</th> </tr> </thead> <tbody> <tr> <td>2,000만원 이하</td> <td>14%</td> </tr> <tr> <td>2,000만원~3억원 이하</td> <td>20%</td> </tr> <tr> <td>3억원~50억원 이하</td> <td>25%</td> </tr> <tr> <td>50억원 초과</td> <td>30%</td> </tr> </tbody> </table>	소득 규모	세율	2,000만원 이하	14%	2,000만원~3억원 이하	20%	3억원~50억원 이하	25%	50억원 초과	30%																
소득 규모	세율																											
2,000만원 이하	14%																											
2,000만원~3억원 이하	20%																											
3억원~50억원 이하	25%																											
50억원 초과	30%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공제한도 확대	<table border="1"> <thead> <tr> <th>총급여</th> <th>공제한도</th> </tr> </thead> <tbody> <tr> <td>7,000만원 이하</td> <td>300만원</td> </tr> <tr> <td>7,000만원 초과</td> <td>250만원</td> </tr> </tbody> </table>	총급여	공제한도	7,000만원 이하	300만원	7,000만원 초과	250만원	<table border="1"> <thead> <tr> <th>총급여</th> <th>공제한도</th> </tr> </thead> <tbody> <tr> <td>7,000만원 이하</td> <td>자녀 1명: 350만원 자녀 2명 이상: 400만원</td> </tr> <tr> <td>7,000만원 초과</td> <td>자녀 1명: 275만원 자녀 2명 이상: 300만원</td> </tr> </tbody> </table>	총급여	공제한도	7,000만원 이하	자녀 1명: 350만원 자녀 2명 이상: 400만원	7,000만원 초과	자녀 1명: 275만원 자녀 2명 이상: 300만원														
총급여	공제한도																											
7,000만원 이하	300만원																											
7,000만원 초과	250만원																											
총급여	공제한도																											
7,000만원 이하	자녀 1명: 350만원 자녀 2명 이상: 400만원																											
7,000만원 초과	자녀 1명: 275만원 자녀 2명 이상: 300만원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범위 조정	소득발생 기간에 따라 비과세 (이후 분리과세) <table border="1"> <thead> <tr> <th>소득발생기간</th> <th>감면내용</th> </tr> </thead> <tbody> <tr> <td>'25.12.31.까지</td> <td>비과세</td> </tr> <tr> <td>'26.1.1.~'26.12.31.</td> <td>5% 분리과세</td> </tr> <tr> <td>'27.1.1.부터</td> <td>9% 분리과세</td> </tr> </tbody> </table>	소득발생기간	감면내용	'25.12.31.까지	비과세	'26.1.1.~'26.12.31.	5% 분리과세	'27.1.1.부터	9% 분리과세	가입일에 따라 비과세(이후 분리과세) (농·어·임업인 조합원,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가입자) <table border="1"> <thead> <tr> <th>소득 규모</th> <th>세율</th> </tr> </thead> <tbody> <tr> <td>2,000만원 이하</td> <td>14%</td> </tr> <tr> <td>2,000만원~3억원 이하</td> <td>20%</td> </tr> <tr> <td>3억원~50억원 이하</td> <td>25%</td> </tr> <tr> <td>50억원 초과</td> <td>30%</td> </tr> </tbody> </table> (그 밖의 가입자) <table border="1"> <thead> <tr> <th>출자일·가입일 기준</th> <th>감면내용</th> </tr> </thead> <tbody> <tr> <td>'25.12.31.까지</td> <td>비과세</td> </tr> <tr> <td>'26.1.1.~'26.12.31.</td> <td>5% 분리과세</td> </tr> <tr> <td>'27.1.1.부터</td> <td>9% 분리과세</td> </tr> </tbody> </table>	소득 규모	세율	2,000만원 이하	14%	2,000만원~3억원 이하	20%	3억원~50억원 이하	25%	50억원 초과	30%	출자일·가입일 기준	감면내용	'25.12.31.까지	비과세	'26.1.1.~'26.12.31.	5% 분리과세	'27.1.1.부터	9% 분리과세
소득발생기간	감면내용																											
'25.12.31.까지	비과세																											
'26.1.1.~'26.12.31.	5% 분리과세																											
'27.1.1.부터	9% 분리과세																											
소득 규모	세율																											
2,000만원 이하	14%																											
2,000만원~3억원 이하	20%																											
3억원~50억원 이하	25%																											
50억원 초과	30%																											
출자일·가입일 기준	감면내용																											
'25.12.31.까지	비과세																											
'26.1.1.~'26.12.31.	5% 분리과세																											
'27.1.1.부터	9% 분리과세																											

▪ 법인세제(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 분야)

- 법인세 전 과표구간 세율 1%p 인상
-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 감면한도 신설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 확대(대기업 5%→10%) 및 세액공제 대상에 웹툰콘텐츠 추가 등

[표 3] 법인세제 주요 개정 내용

구분	현행(2025년)			개정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내국 법인	성실신고 확인대상 소규모 법인		내국 법인	성실신고 확인대상 소규모 법인				
법인세율 인상	2억원 이하	9%	19%	2억원 이하	10%	2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9%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21%	21%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22%	22%				
	3천억원 초과	24%	24%	3천억원 초과	25%	25%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 개편	(연차별 공제액)				(연차별 공제액 조정)					
	구분	공제액 (단위: 만원)				구분	공제액 (단위: 만원)			
		중소		중견	대기업		중소		중견	대기업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기본	850	950	450	-	1년	400	700	300	-	
우대	1,450	1,550	800	400	2년	900	1,200	500	-	
	(사후추징) 공제 후 2년 이내 상시근로자 수 감소시 공제액 상당분을 추징하고, 감소가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전액 공제 배제				(사후추징 규정 개편) 상시근로자 수 감소시 감소분에 한하여 공제 배제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 감면한도 및 사후관리 규정 신설	<신설>				(감면한도) 투자누계액의 70% + 이전공장 상시근로자수 × 1,500만원* *청년 등 2,000만원 (사후관리) 세액감면 후 2년 내 상시근로자 수 감소시 추징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기본 공제율) 대기업 5%, 중견 10%, 중소 15% (공제대상)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기본 공제율) 대기업 10%, 중견 10%, 중소 15% (공제대상) 영상콘텐츠 및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환류대상) 투자, 임금증가, 상생협력				(환류대상 추가) 투자, 임금증가, 상생협력, 배당					

▪ 소비세제(개별소비세법, 관세법 등)

- 법 시행일부 2년간 합성니코틴에 대한 개별소비세에 대해 50% 경감세율 적용
- 항공기 부품품에 대한 관세 면제 적용기간 3년 연장(2025년 말까지 100%→2028년 말까지 100%) 및 감면을 단계적 축소 구간 폐지 등

[표 4] 소비세제 주요 개정 내용

구분	현행(2025년)					개정				
합성니코틴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	<신설>					법 시행일부 2년간 50% 경감세율 적용				
항공기부분품 관세 면제 적용기간 3년 연장	연도	'25년	'26년	'27년	'28년	연도	'25년	'26년	'27년	'28년
	감면율	100%	80%	60%	40%	감면율	100%	100%	100%	100%

▪ 기타세제(교육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분야 등)

-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 구간 신설 및 세율 인상
- 조세지출결산서 작성 의무 신설 등

[표 5] 기타세제 주요 개정 내용

구분	현행(2025년)		개정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율 인상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금융·보험업자 수익금액	0.5%	금융·보험업자 수익금액 1조원 이하	0.5%
			금융·보험업자 수익금액 1조원 초과	1.0%
조세지출결산서 작성	<신설>		조세지출의 직전 연도 실적을 분석한 조세지출결산서 작성 의무화	

▪ 2025년 개정세법 세수효과

-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년 개정세법에 따라 2026년 3조 1,237억원 등 2026~2030년간 누적 37조 5,104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추계
- 당초 정부 제출 세법개정안의 세수증가 규모 대비 2,936억원 축소

[표 6] 2025년 개정세법 세수효과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소득세	△188	△6,534	△7,295	△6,935	△6,656	△27,609
법인세	6,587	44,354	44,361	44,369	44,400	184,071
부가가치세	1,757	2,728	3,094	3,463	3,532	14,573
상속세·증여세	32	64	64	64	64	288
증권거래세	21,921	24,844	25,938	27,052	28,213	127,967
기타	1,129	16,568	17,728	19,978	20,411	75,813
합계	31,237	82,023	83,890	87,991	89,963	375,104

주: 2025년(기준연도) 대비 세수효과를 연도별로 산출하는 누적법에 따른 세수효과임
 자료: 국회 수정 반영 세수효과 및 정부 세법개정안 세수효과는 국회예산정책처 추계

※ 국회의 2025년 세법개정 심사 경과와 주요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2월 중 발간 예정인 「2025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보고서를 통해 소개할 예정

개정세법
세수효과